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담당자 인권보호관 최현철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9. 26.(목)

마약을 유통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사건 추가 수사결과 발표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 유통·투약의 경로로 활용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이 동아리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까지 전파된 추가 범행을 적발하여,
 - 회장 A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추가 기소하고, 2명(대형병원 의사, 상장사 임원)은 구속 기소, 2명(대학생)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명(회사원)은 기소유예(사법치료재활조건부)하였습니다.
- 수사결과, A는 고급 호텔, 클럽 등지에서 동아리와 무관한 자들도 초대하여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는 등, 연합동아리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진 범행의 전모가 확인되었습니다.
 - ※ A는 동아리와 무관하게, 직장인·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자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습니다.
- 대형병원 의사인 D는 동아리 회원 C와 함께 A로부터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D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 D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강사로, 신속히 구속하여 의료현장에서 격리시켰습니다.
-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A를 통해 마약을 접한 대학생 G는 A의 구속으로 마약을 구할 길이 없어지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오던 상장사 임원 E를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 ※ E는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G 등 주로 20대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 검찰은 성별·연령·직업 등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습니다.

1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

순번	피의자	지위	죄명 및 범죄사실	처분
1	A (30대 초반, 무직, 구속中)	회장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 '22. 11 - '23. 10. 매수·매도(각 1회), 수수(6회), 투약(2회)	추가 기소
			※ '24. 4. 17.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中 / '24. 7. 1. 추가 기소	
2	B (여, 20대 중반, 대학생, 구속中)	회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22. 11 - '23. 11. 수수·투약(각 2회)	추가 기소
			※ '24. 7. 1. 구속 기소[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3	C (여, 20대 초반, 대학생, 구속中)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23. 7 - 11. 매수·수수(각 1회), 투약(4회)	추가 기소
			※ '24. 8. 5. 구속 기소[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4	D (30대 중반, 의사)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 '23. 10 - 11. 매수·보관(각 1회), 투약(3회)	구속 기소
5	E (40대 중반, 상장사 임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24. 7. 투약(2회)	
6	F (여, 20대 초반, 대학생)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23. 3. 매수·투약(각 1회)	불구속 기소
7	G (여, 20대 중반, 대학생)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23. 7. - '24. 7. 투약(2회)	
※ 그 외 단순투약 회사원 1명(H)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수사협조한 점 감안하여 같은 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대학생 피의자들은 서울·수도권 대학교 재학중

2

주요 수사 경과

- '24. 1. 18.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A 구속 기소

※ '23. 12.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소지(각 1회), 운전면허증 변조

- ▶ A에 대한 마약사건 공판 과정에서, A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수회 입금된 거래내역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함
- ▶ 이후, 휴대전화 압수, 계좌코인거래·통신분석 등을 통해 동아리 임원→동아리 회원→동아리 비회원 순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범행의 전말을 밝혀냄

- '24. 3 - 7. 검찰 수사진행

※ 주거지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코인·통화내역 분석, 코인 동결 등

- '24. 4. 17. A에 대한 선행사건 1심 선고(징역 3년 등)

- '24. 6. 13. B 등 구속

- '24. 7. 1. 구속 기소(B 등), 불구속 기소(A), 조건부기소유예(4명)

- '24. 7. 25. C 구속

- '24. 8. 5. 구속 기소(C), 불구속 기소(2명), 조건부 기소유예(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4명)

※ 1차 보도자료 배포

- '24. 9. 5. D 구속

- '24. 9. 11. E 구속

- '24. 9. 12. 구속 기소(D), 불구속 기소(C, G)

- '24. 9. 26. 구속 기소(E), 불구속 기소(A, B, F), 조건부 기소유예(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H)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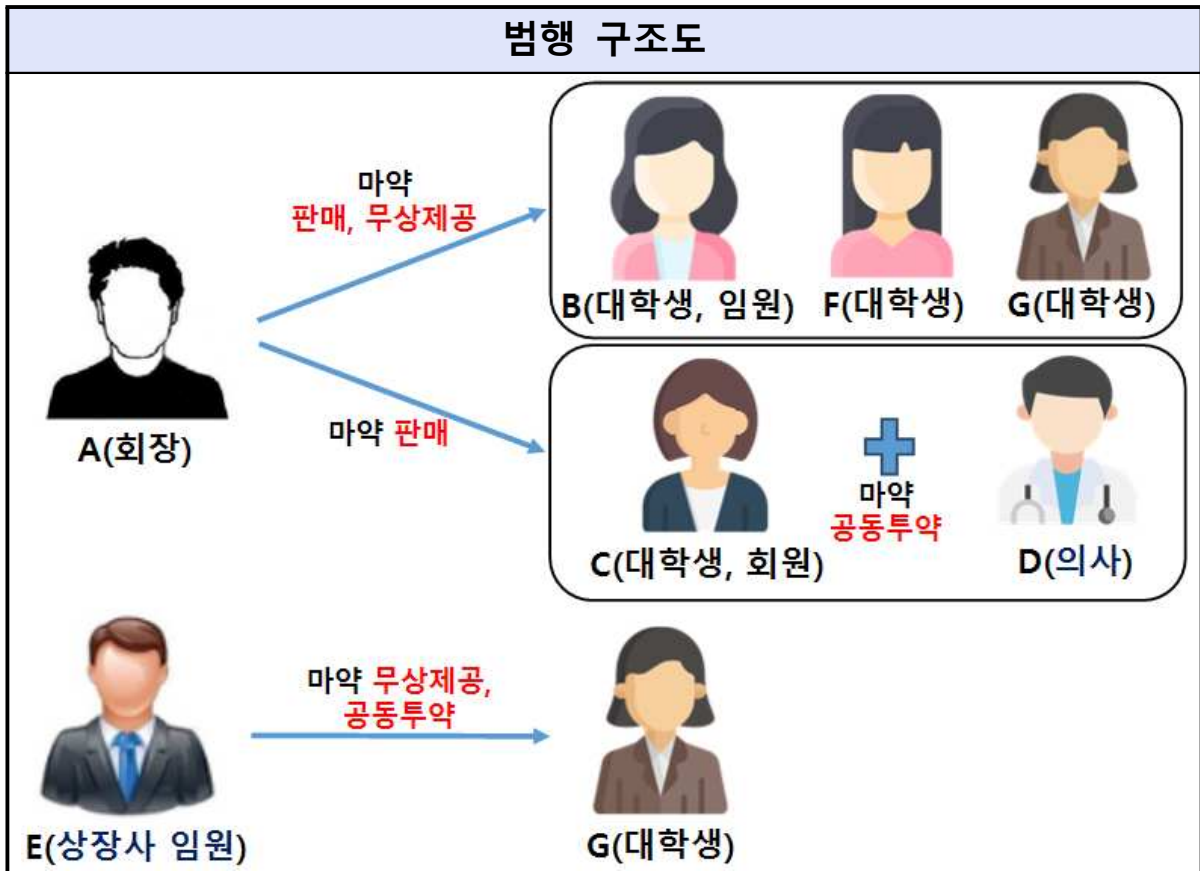
- 중독전문의, 중독·심리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상자의 중독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안, 대상자는 치료보호기관과 「함께한걸음센터(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건 이수, 조건 미이수시 형사처벌절차로 복귀

3

수사 결과 및 의의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이외에도 직장인, 의사 등 일반인들도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합동아리 회장 A는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동아리 모임을 개최하면서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 자들은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 명문대 재학생, 대형병원 의사 등으로 A는 대학생 연합동아리가 아닌 일반 직장인 등에게도 마약을 유통시킨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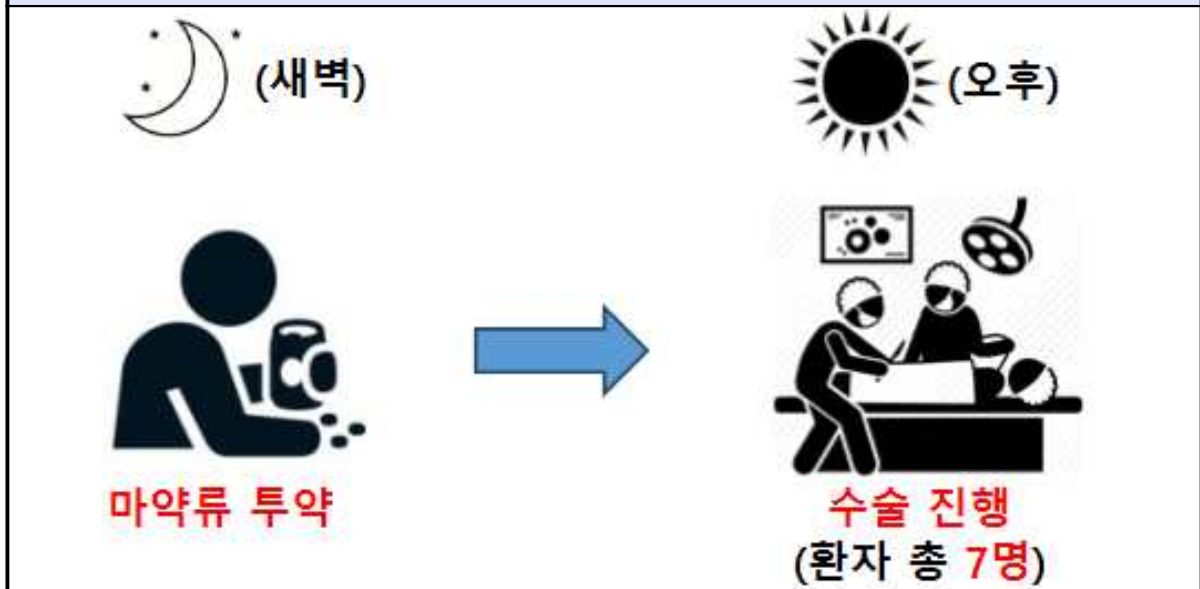


- A는 특정 영상을 시청하면 마약의 환각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며 해당 영상을 공유하였는데, 그 공유 상대방에는 의학지식이 박식한 대형병원 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의 마약 범죄를 엄단하였습니다.

- D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마약류 진통제 처방을 수반하는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마약류취급자입니다.
 - ‘임상강사’란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D는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갖추었음에도 마약범죄에 나아간 것입니다.
- D는 A로부터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하여 A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고, A의 계좌로 마약 대금을 송금한 대학생들과 달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D는 이렇게 매수한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는데,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 D는 약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새벽에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투약한 당일 병원에 각 출근하여 총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였는바, ①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② D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D는 마약 투약 후 같은 날에 수술을 진행함



- D가 투약한 마약은 그 투약효과가 최대 6시간(MDMA), 10시간(대마)까지 지속하고, 체내에 최장 24시간(MDMA), 7일(대마)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D가 진행한 수술은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처럼 D는 본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2개월간 의료행위를 이어 왔는바, 신속히 구속하여 의료현장에서 격리하였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겠습니다.

A 및 연합동아리와 무관한, 상장사 임원의 마약 범행도 적발하였습니다.

- E는 미국 대학 출신 40대 남성으로 코스닥 상장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E는 '20.경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대범하게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나아갔습니다.

- G는 동아리 회원이 아님에도 A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아 투약하던 중, A가 구속되어 마약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상장사 임원인 E를 소개받아 서울 소재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약 13km 구간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E는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과 G의 팔에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사용한 주사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검찰은 '24. 9.경 미국으로 도주하려던 E를 신속히 구속하여 기소하고, G 역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E는 소환 요구를 받은 후 미국 출장을 명분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였으나, 신속한 출국금지로 좌절되었습니다.

4

향후 계획

- 검찰은 기소대상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검찰은 최근 마약 투약 사범의 가파른 증가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일부 제한되어 수사에 제약이 있으나, 그럼에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